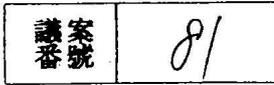


# 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

大 田 直 轄 市

## 大田直轄市稅 條例 改正 條例案



1991. 12. 20.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가. 地方稅法 第 3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治團體의 地方稅에 關한 條例를 制定 運營하였으나 條例의 內容이 地方稅法과 重複된 事項이 많아 地方稅法이 改正되면 條例도 改正하여야 하는 弊端이 있으므로

나. 地方稅法이 法律 第 4415號 ('91. 12. 14)로 많은 內容이 改正公布됨에 따라 地方稅法上 條例로 規定하도록 한 標準稅率 및 制限 稅率 稅目的 稅率과 기타 필요한 事項을 定하여 全文改正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가. 地方稅法上 條例로 定하도록 한 事項 規定

- 購販 事業등 不動產 및 事業用 航空機의 輕減率
- 地域開發稅의 賦課地域 指定 等

나. 標準(制限) 稅率과 다르게 定할수 있도록한 稅目的 稅率調整

- 住民稅, 自動車稅, 屠畜稅, 都市計劃稅, 地域開發稅 等

### 3. 參考事項

#### ○ 地方稅法

- 第 110條의 4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第 112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第 2號, 第 3號 및 第 5號의 경우 取得日로부터 1年 이내에 正當한 事由 없이 그 事業에 직접 使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輕減된 取得稅를 追徵한다.
  - 3. 第 1項 第 14號 내지 第 16號의 法人이 購販事業等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事業에 직접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不動產.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그 輕減率을 100分의 50을 超過하여 定할 수 있다.
  - 7.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用 航空機. 이 경우 國際線에 주로 就航하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그 輕減率을 100分의 50을 超過하여 定할 수 있다.
- 法 第 176條 ③ 市長.郡守는 당해 年度分의 住民稅의 稅率을 第 1項 및 第 2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 範圍안에서 加減調整하여 定할수 있다.
- 法 第 196條의 5 ③ 大統領令이 定하는 都市의 市長.郡守. 區廳長은 第 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稅의 稅率을 排氣量등을 勘案하여 第 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까지 超過하여 定할수 있다
- 法 第 234條의 2 ③ 市長.郡守는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年度分의 屠畜稅의 稅率을 1000分의 10 이하로 定할 수 있다.

- 法 第 237條 ② 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年度分의 都市計劃稅의 稅率을 第 1項의 標準稅率과 다르게 定할수 있다. 이경우 稅率은 그 價額의 1000分의 3을 超過 할 수 없다.
  
- 法 第 257條 (課稅標準과 稅率) ① 地域開發稅의 課稅標準과 標準稅率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發電用水 : 發電에 이용된 물 10m<sup>3</sup>當 1원
  2. 地下水 : 開發하여 採水된 물 1m<sup>3</sup>當 10원
  3. 地下資源 : 採鑛된 鑛物價額의 1000分의 1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 (TEU)當 15,000원
- ② 道知事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開發稅의 稅率을 第 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 範圍안에서 加減 調整할 수 있다.
  
- 市政調整委員會 審議
  - 書面審議 : '91. 12. 19. (木)
  - 審議結果 : 原案 可決  
(全體委員 16名中 15 名 贊成)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세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직할시세 조례

#### 제1장 총 칙

#### 제1절 통 칙

제1조(과세의 근거) 대전직할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대전직할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마권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지역개발세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절 부 과 징 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 소비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2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세부과징수사무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등록을 동장에게 신청할 경우의 시세부과징수사무를 제외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규정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 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가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청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다른 분과 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장

### 제 1 절 취 득 세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
3. 취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기타 참고사항

제18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영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1월 1일
2. 건물 및 선박 : 매년 1월 1일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0조(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중기에 있어서는 종류·연식·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형식 및 용도
12. 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액과 그 산정근거
7. 기타 참고사항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제신청) 법 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의 소재지
3. 취득년월일·벌채허가 연월일 및 벌채기간
4. 수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5. 기타 참고사항

제22조(사업용 항공기의 경감율) 법 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경감율은 107분의 75로 한다.

제23조(취득물건 전입신고) 타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절 등 록 세

제2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 2 및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연월일
3. 등기 등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기타 참고사항

제25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128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구관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률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절 주 민 세

제2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2,500 원
2. 법인 : 별지와 같음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손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대통령 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50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35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 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20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100,000 원
기타 법인	50,000 원

제27조(납기등)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 제 4 절 자 동 차 세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1,000씨씨 이하	18 원	800씨씨 이하	100 원
1,500씨씨 이하	18 원	1,000씨씨 이하	120 원
2,000씨씨 이하	19 원	1,500씨씨 이하	160 원
2,500씨씨 이하	19 원	2,000씨씨 이하	220 원
2,500씨씨 초과	24 원	2,500씨씨 이하	250 원
		3,000씨씨 이하	410 원
		3,000씨씨 초과	630 원

2. 기타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 원	100,000 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 버스	100,000 원	
대형 전세 버스	70,000 원	
소형 전세 버스	50,000 원	
대형 일반 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 일반 버스	25,000 원	65,000 원

4. 화물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 원	79,500 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 원	157,500 원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 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 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 형 특 수 자 동 차	36,000 원	157,500 원
소 형 특 수 자 동 차	13,500 원	58,500 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 원	18,000 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 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신고의무)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및 배기량
5. 취득가격
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7. 기타 참고사항

## 제 5 절 농 지 세

제3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 연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연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중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중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관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감면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구청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7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8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지조사 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구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30,000 원
2. 여비 : 5급공무원 기준

## 제 6 절 담 배 소 비 세

제3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40조(기장의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 수입 ·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7 절 도 축 세

제41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구청장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2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43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폐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폐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폐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폐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액) 구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 3.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와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8 절 마 권 세

제49조(신고납부등) ①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때마다 경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 적중수
4.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

제51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기 종료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 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52조(징수교부금 지급) 시장이 영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제 3 장 목 적 세

### 제1 절 도 시 계 획 세

제5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 및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 과세 대장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54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6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서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59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 로 한다.

제6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1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이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2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 절 공동시설세

### 제 1 관 소방시설

제63조(납세의무자)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 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4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인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6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72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절 지 역 개 발 세

### 제 1 관 발 전 용 수

제73조(납세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의 발전 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4조(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전력 생산 및 사용 현황
3.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무상사용확인서
4. 기타 참고사항

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10세제곱미터당 1 원으로 한다.

제76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대전직할시 전지역으로 한다.

### 제 2 관 지 하 수

제77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라 함은 채수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과 온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채수한 온천수를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용수”라 함은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하에서 채취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제78조(납세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9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 원으로 한다.

제80조(부과징수등)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대전 직할시 전지역으로 한다.

②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은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 3 관 지 하 자 원

제81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1 로 한다.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  
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83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은 대전  
직할시 전지역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